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정 (602)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검정의 구분 및 정의)

제3조(검정의 순서)

제4조(수입한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특례)

제5조(수출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특례)

제2장 형식검정

제6조(형식검정의 신청)

제7조(형식승인)

제8조(형식변경검정의 신청 등)

제9조(경미한 사항의 형식변경)

제10조(조건부 승인)

제11조(형식의 표준화 등)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제3장 개별검정

제13조(개별검정의 신청)

제14조(개별검정의 최소 검수량)

제15조(개별검정의 방법 등)

제16조(개별검정의 합격표시 등)

제17조(수시검사)

제4장 보 칙

제18조(검정신청의 취하)

제19조(자체시험시설의 검사 등)

제20조(자체시험시설 등의 교체 신고)

제21조(보고)

제22조(검정수수료)

제5장 분사기용 가스용기

제23조(적용범위)

제24조(구조 및 재질)

제25조(충전가스)

제26조(내부용적)

제27조(기밀시험)

제28조(내압시험)

제29조(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제30조(파괴압시험)

제31조(압괴시험)

제32조(나사보호조치)

제33조(표시)

제34조(기타)

부 칙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정

1990.10.30 제정
1991.11.22 개정
2001. 2.14 개정
2004.11.18 개정
2013. 7. 1 개정
2016. 8. 1 개정
2017.11. 1 개정
2020. 4.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술상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

제2조(검정의 구분 및 정의)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구분 및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형식검정”이라 함은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견품(이하 “견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하 “형상등”이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식변경 검정”이라 함은 형식승인을 얻은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형상 등의 부분적인 변경이 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별검정”이라 함은 개개의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형상 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것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정의 순서)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순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은 다음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입한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분사기용 가스용기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한 분사기용 가스용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검정시 설치 목적상의 주기능 시험만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군 작전용 또는 치안 목적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
2.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주한 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

3.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③ 수입 분사기용 가스용기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KS, UL, FM, JIS 등)에서 합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출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특례) ①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한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격 또는 사양에 따라 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출코자 하는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대하여 그 형상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형상 등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검정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외에 수출 신용장 및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는 사양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적합한 때에는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합격표시를 한다. 이 경우 국내 시판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합격표시 등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장 형식검정

제6조(형식검정의 신청)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식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

2. 시험성적표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개정 2017.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한 수량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검정이 끝난 후 개별검정을 위한 보관용 견품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협회에서 정하는 품목의 견품은 보관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7조(형식승인) 형식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대한 형식을 승인하고 형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제8조(형식변경검정의 신청 등)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형식의 일부를 별표2의 변경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식변경검정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변경 부분에 한한다) 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견품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

2. 시험성적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수량의 완성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정이 종료된 후 제출된 견품 중 보관용 견품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정하는 품목의 견품은 보관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④ 형식변경 검정의 결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형식변경을 승인하고 형식변경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식변경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경미한 사항의 형식변경)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별표3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변경부분에 한한다)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2. 명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건부 승인) 제7조 또는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할 때 그 형식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흠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공업 소유권상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예상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형식의 표준화 등)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거나 기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당해 형식을 표준화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형식승인(형식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형식승인과 형식번호(형식변경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때
2. 분사기용 가스용기를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기타검정을 해하는 현저한 행위를 한 때
3. 분사기용 가스용기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검정을 받은 후 국내시장에 유출시킨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 검사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발견된 때
6. 형식의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과 형식번호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형식승인을 받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별검정

제13조(개별검정의 신청) 형식승인을 얻은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개별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별검정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별검정의 최소 검수량) 개별검정을 받을 수 있는 1회의 최소 검수량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수입한 분사기용 가스용기로써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의 최소 검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검정의 방법 등)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개별검정은 검정신청수량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샘플링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검사와 샘플링검사 방법의 구분은 KS A ISO 2859-1의 부표1의 특별검사수준 S-3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검사방식(2.5%)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18)

제16조(개별검정의 합격표시 등)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가 개별검정에 합격된 때에는 별표5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② 분사기용 가스용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개별검정 전에 합격표시(날인을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별표5에 의한 합격표시와 비슷하거나 외관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시검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개별검정을 받은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검정신청의 취하) ① 검정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취하원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원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견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은 불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자체시험시설의 검사 등)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제조업소의 자체시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자체시험시설 등의 교체 신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제조업자가 그 자체 시험시설을 교체 변경 증설하거나 위치 변경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체 시험시설 변경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협회 이사장은 매 월별로 지정받아 시행한 결과를 별지서식에 의거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검정수수료)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6에 의한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2.14)

② 신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외에 분사기시험 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비를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시험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장 분사기용 가스용기

제2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4조(구조 및 재질)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사기용 가스용기는 안전하게 사용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분사기용 가스용기는 적절한 방청가공이 되어야 하고, 다듬질 면이 매끈하여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갈라진 금, 뚜렷한 금형자국(줄무늬 따위의 압연흔적 등을 말한다) 및 주름 등이 없어야 한다.
3. 분사기용 가스용기(작동봉판은 제외한다)의 재질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3종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조회사에서 국가공인 기관에 의뢰,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충전가스)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충전하는 가스는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화 이산화탄소의 충전허용 범위는 5g ~ 17g±3
2.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의 충전허용 범위는 신청치 ±10%로 한다.

제26조(내부용적)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내부용적은 액화 이산화탄소 1g에 대하여 1.1㎤이상일 것.
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는 충전가스 중량에 따라 그 용기의 최고 충전압력(섭씨 35도에서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압축 가스 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내부 용적일 것.

제27조(기밀시험) 가스를 충전한 가스용기는 섭씨 $40\ ^{+5}_{-2}$ 도의 온수 중에 4시간 동안 담갔을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8조(내압시험) ① 분사기용 가스용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2분간 가하는 경우 새지 아니하여야 하고 내부용적의 10% 이상의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분사기용 가스용기는 200kg/㎠의 압력(개정2004.11.18)
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분사기용 가스용기는 최고 충전압력의 5/3배의 압력

②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압력을 수압력으로 2분간 가하는 경우 새거나 현저하게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용접식 가스용기는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은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각 호1에 해당하는 압력
2. 조임금구식 가스용기의 작동 봉판은 180kg/㎠의 압력

제29조(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는 각각 다음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해당 범위내에서 파괴되어야 한다.

1. 용접식 가스용기의 압력작동봉판은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의 압력내지 설계용기 파괴압력의 4/5배 이하 압력

제30조(파괴압시험) 용접식 가스용기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괴되어야 하며, 파괴될 때 주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450kg/㎠ 이상 900kg/㎠ 이하의 압력
2. 질소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최고 충전압력의 4배(안전작동봉판을 사용한 가스용기의 경우에는 3배) 이상 6배 이하의 압력
3. 가스용기가 파괴된 상태가 2개소 이상의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파괴될 때 용기의 파편이 날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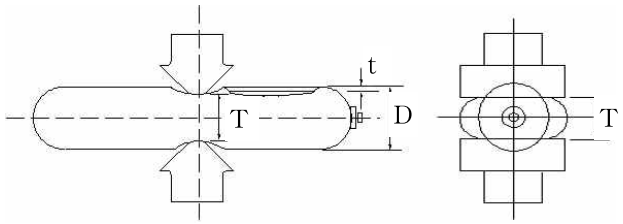
제31조(압괴시험) 용접식 가스용기는 그림1에 표시하는 2개의 강제 쐐기를 사용하여 그림2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가스용기의 축과 직각으로 쐐기간의 거리가 용기몸체 재질두께의 8배가 될 때까지 압괴한 경우에 터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림 1



단위 : 밀리미터

그림 2



D : 용기의 외경　t : 용기 몸체 재질 두께
T : 쐐기간의 거리

제32조(나사보호조치)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취급 또는 보관 시에 가스용기의 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표 시) 분사기용 가스용기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각인 등 방법으로)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16조1항의 합격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1. 형식승인 번호(G-년도-일련번호)
2.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기호
3. 충전가스의 종류 및 가스중량(CO_2, N_2, $CO_2 + N_2$ 등)
4. 가스용기의 중량(조임금구식 가스용기에 한한다)(E_{wg})
5. 가스 충전시의 중량(T_{wg})
6. 용도(분사기 가압가스용)

제3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이사장이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4)

① 이 규정은 200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8)

①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

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

①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

①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8)

① 이 규정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관련)

형식검정 신청서에 제출할 견품의 수량

품 명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분사기용 가스용기	완 성 품	15개
	부 분 품	1조

(별표2) (제8조1항 관련)

형식변경 승인 범위

품 명	변 경 범 위
분사기용 가스용기	1. 본체 용기 및 부품의 재질 2. 본체의 용량(중량)

(별표3) (제9조제1항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범위

종 별	변 경 범 위
분사기용 가스용기	1. 부품의 치수 또는 형상(기능에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함) 2. 내식 또는 방청가공(작동봉판은 제외) 3. 충전비(기준 가스양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별표4) (제14조 관련) (개정 2005. 1. 1)

개별검정의 최소 검수량

종 별	최 소 검 수 양 (개)
분사기용 가스용기	500

(별표5)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개별검정의 합격 표시

종 별	표 시 의 양 식
분사기용 가스용기	협회 검사 스티커 사용

(별표6) (제22조 제1항 관련) (개정 2005. 1. 1)

검정수수료

(단위 : 원)

종 별	형식검정	형식변경 검정	개별검정
분사기용 가스용기	1,000,000	500,000	75,000원/500개

(별표7)

형식검정 및 개별검정 시험항목

검정시험항목	형식검정	개별검정
1. 기밀 시험	○	○
2. 가압용기의 내압시험	○	△
3. 파괴압 시험	○	△
4. 압괴 시험	○	△
5.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내압	○	△
6.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	△
7. 내부용적비 및 충전가스 중량	○	△
8. 구조검사	○	△
9. 총 중 량	○	△
10. 외관검사	○	○
11. 표시검사	○	○
12. 재질검사	○	△

○ 검정항목

△ 부정기 검정 항목

(별표8)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시험항목별 판정기준

샘플링방법	검사방법		시험항목	판 정 기 준
검정규칙 제16조 준용	일반검사		1. 구 조	• 구조 및 재질이 신청도면과일치할 것.
			2. 표시사항	• 제33조의 규칙에 의할 것.
			3. 총 중 량	• 실측량이 허용범위 이내일 것.
			4. 외 관	• 방청가공 상태 • 표시의 유지상태 • 부식, 갈라짐, 주름, 흠의 유무
			5. 기밀시험	• 새거나 파열되어 있지 않을 것.
	특별검사	용접식 가스용기	1. 충전가스의 중량	• 실측량이 허용범위 이내일 것.
			2. 내부용적비	• 실측량이 허용범위 이내일 것.
			3. 내압시험	• 허용범위 내에서의 변형 및 파괴 여부
			4. 파괴압시험	• 허용범위 내에서의 파괴압 상태 • 파편의 비산 또는 두곳 이상의 균열이 없을 것.
			5. 압괴시험	• 균열 또는 터짐이 생기지 아니할 것.
			6.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시험	• 허용범위 이내일 것.
		조임금구식가스용기	1. 충전가스의 중량	• 실측량이 허용범위 이내일 것.
			2. 내부용적비	• 실측량이 허용범위 이내일 것.
			3. 내압시험	• 허용범위 내에서의 변형 및 파괴 여부
			4. 작동봉판의 강도시험	• 허용범위 이내일 것.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1항 관련)(개정 2017.11.1, 2020.4.28)

<table>
<tr><td colspan="3">형 식 검 정 신 청 서</td><td>처리기간
20 일</td></tr>
<tr><td rowspan="3">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td><td colspan="3">1. 성명</td></tr>
<tr><td>2. 상호</td><td colspan="2">3.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3">4. 주소</td></tr>
<tr><td>업 종</td><td>5. 종별</td><td colspan="2">6. 형식</td></tr>
<tr><td colspan="4">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오니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귀하</td></tr>
<tr><td colspan="3">구 비 서 류

1. 설계도 및 명세서 2부
2. 시험성적표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의 경우) 1부
4. 견 품(완성품) 개
5. 기타 관계서류 및 자료1부</td><td>수 수 료
별표6 검정
수수료에 의함</td></tr>
</table>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관련)

제 호

형 식 승 인 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귀하가 신청한 견품을 검정하였던 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형식을 승인합니다.

1. 종 별
2. 형 식
3. 형식번호
4. 조 건

년 월 일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210㎜×297㎜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관련)(개정 2013. 7. 1, 2020.4.28)

<table>
<tr><td colspan="3">○ 형식변경
○ 경미한 사항 변경
신 청 서</td><td>처리기간
20 일</td></tr>
<tr><td rowspan="3">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td><td colspan="3">1. 성명</td></tr>
<tr><td>2. 상호</td><td colspan="2">3.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3">4. 주소</td></tr>
<tr><td rowspan="2">업 종</td><td>5. 종별</td><td colspan="2">6. 형식</td></tr>
<tr><td>7. 형식승인
번 호</td><td colspan="2">8. 형식승인
번 호</td></tr>
<tr><td rowspan="2">변경사항</td><td>9. 변경 전</td><td>10. 변경 후</td><td>11. 변경사유</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4">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변경 검정(경미한 사항 변경)을 신청하오니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귀하</td></tr>
<tr><td colspan="3">구 비 서 류(2, 3, 4항은 형식 변경 검정 신청에 한함)
1. 설계도 및 명세서(변경부분) 2부
2. 시험성적표(변경부분) 1부
3. 견 품(변경된 완성품) 조
4. 기타자료</td><td>수 수 료
별표6에 의함.</td></tr>
</table>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 제4항 관련)

제 호

형 식 변 경 승 인 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귀하가 신청한 형식의 변경을 검정하였던 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형식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1. 종 별
2. 형 식
3. 형식번호
4. 조 건

년 월 일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 관련)(개정 2017.11.1, 2020.4.28)

<table>
<tr><td colspan="3">

개 별 검 정 신 청 서

</td><td>처리기간
12 일</td></tr>
<tr><td rowspan="3">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td><td colspan="3">1. 성명</td></tr>
<tr><td>2. 상호</td><td colspan="2">3. 전화번호</td></tr>
<tr><td>4. 주소</td><td colspan="2">5. 희망수검일</td></tr>
<tr><td rowspan="3">업 종</td><td>6. 종별</td><td colspan="2">7. 형식</td></tr>
<tr><td>8. 형식승인
번 호</td><td colspan="2">9. 형식승인
일 자</td></tr>
<tr><td>10. 신청수량</td><td colspan="2">11. 제조번호</td></tr>
<tr><td colspan="4">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하오니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귀하

</td></tr>
<tr><td colspan="3">

구 비 서 류(2, 3, 4항은 형식 변경 검정 신청에 한함)

1. 수입신고필증사본(수입의 경우) 1부
2. 신용장 사본(수출의 경우) 1부
3. 수출허가증 사본(수출의 경우) 1부
4. 기타

</td><td>수 수 료
별표6에 의함.</td></tr>
</table>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 제1항 관련)(개정 2013. 7. 1, 2020.4.28)

<table>
<tr><td colspan="3">

취 하 원 서

</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td><td colspan="3">1. 성명</td></tr>
<tr><td>2. 상호</td><td colspan="2">3.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3">4. 주소</td></tr>
<tr><td>6. 신청구분</td><td colspan="3"></td></tr>
<tr><td>7. 접수일자(번호)</td><td colspan="3"></td></tr>
<tr><td>8. 취하서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취하원서를 제출하오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구분
2. 접수일자(번호)
3. 취하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귀하

</td></tr>
<tr><td colspan="3">구 비 서 류 없음</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297㎜

(별지 제7호 서식) (제20조 관련)(개정 2013. 7. 1, 2020.4.28)

<table>
<tr><td colspan="4">

자 체 시 험 시 설 변 경 신 고 서

</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td><td colspan="4">1. 성명</td></tr>
<tr><td colspan="2">2. 상호</td><td colspan="2">3.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4">4. 주소</td></tr>
<tr><td rowspan="3">변경내용</td><td colspan="4">5. 변경일자</td></tr>
<tr><td>6. 변경전</td><td>7. 변경후</td><td colspan="2">8. 변경사유</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분사기용 가스용기의 검정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설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귀하

</td></tr>
<tr><td colspan="4">구 비 서 류
변경 설명서(도면규격) 1부</td><td>수 수 료
별표6에 의함.</td></tr>
</table>

210㎜×297㎜